1. 법률 등*

가. 「상법 시행령」 개정(2012/4/10 개정, 4/15 시행)

1) 개정목적

□ 상법(법률 제10600호, 2011.4.14. 공포, 2012.4.15. 시행)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

2) 개정내용

□ 현물출자에 있어 검사인의 조사, 보고의 면제범위를 구체화함(7조, 14조)

— 개정 상법이 회사설립 혹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산총액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, 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정관기재가격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, 위 사항에 준하는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감정을 면제하도록 하여 현물출자규제를 완화하였음(상법 299조 2항, 422조 2항)

— 이에 시행령은 현물출자한 재산 가액을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유가증권의 현물출자시 정관기재가격에 대한 시세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시세산정기준은 정관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한 거래소에서의 1개월 평균 종가, 1주일 평균종가 및 정관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혹은 정관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종가 중 낮은 금액임
- 단 현물출자 재산 및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에 그 사용, 수익, 담보제공,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 위 시세산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

* 해당 내용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

☐ 자기주식의 취득 절차와 방법을 마련(9조, 10조)

— 개정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(공개매수와 시장매수) 혹은 상환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(상법 341조 1항)

— 이에 시행령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혹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규정함

  • 자기주식 취득회사는 지체없이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이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

— 또한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로써 취득목적,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,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,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, 양도신청기간, 양도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정하여야 함

— 회사는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,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

  • 단 무기명식 주권발행의 경우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함

☐ 회계원칙을 구체화하여 회사 유형별로 적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(15조)

— 개정 상법은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야 한다는원칙 규정을 마련함(상법 446조의2)

— 이에 시행령은 회계실무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회사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외의 회사로 분류하여 각각의 회계기준을 정함

☐ 사채발행 절차와 발행기준을 구체화함(20조~24조)

— 개정 상법은 이익참가부사채,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,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사채발행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(상법 469조)

— 이에 시행령은 각종 사채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함

	발 행 절 차
이익참가부사채(21조)	- 이사회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 정한 바 없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,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,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-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가액과 참가 내용에 관하여 정하여야 함 - 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보유한 각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진 이익참가부사채의 액, 발행가액, 이익참가의 조건 및 일정한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(무기명식 주권인 경우 공고)하여야 함 - 회사는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시 납입완료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및 각각의 금액, 납입금액,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을 등기하여야 함
교환사채(22조)	- 이사회는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, 교환의 조건, 교환 청구기간을 결정함 -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 발행시 그 상대방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함 -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
상환사채(23조)	- 이사회는 상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, 상환의 조건, 회사의 선택 또는 일정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한다는 뜻을 정하여야 함 - 주주 외의 자에게 상환사채 발행시 그 상대방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함 - 회사는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함
파생결합사채(24조)	- 이사회는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데 연계할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이나 지표, 해당 자산이나 지표와 연계하여 상환 또는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하여야 함 - 또한 시행령은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파생결합사채를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기초자산의 가격 · 이자율 · 지표 ·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로 규정함(20조)

□ **사채관리회사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(26조, 27조)**

— 개정 상법은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권한 중 변제의 수령, 채권의 보전, 그 밖에 사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지정 ·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에 대한 일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(상법 480조의3)

— 이에 시행령은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으로 상법상 규정한 은행, 신탁회사 이 외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산용사업부문, 신탁업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, 투자매매업자로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, 한국예탁결제원, 증권금융회사를 명시함

— 또한 시행령은 사채관리회사 자격에서 배제되는 사채관리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최대주주,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
□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(39조~42조)

— 개정 상법은 준법경영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회사로 하여금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둘 것을 규정함(상법 542조의13)

— 이에 시행령은 준법지원제도 적용대상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준법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마련함

- 준법통제기준은 제정 및 변경절차,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,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며,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됨
-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상장회사에서 감사 · 감사위원 · 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,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 · 감사위원 · 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

— 단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을 배제함(부칙 5조)

연구원 김수연 (02-3771-0673, portia725@kcmi.re.kr)